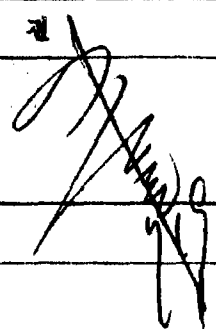


고시

공고제, 아호

기안용지

조립보호제

분류기호 문서번호	녹지 130-1768	(전화번호 420)	권별구정 국장	조항 전결사항	
처리세간					
시행일자					72. 7.
보존별한					
보조 기 관					녹지과장 조립보호제장
기안책임자	전 채규	72. 7. 15	조	임정제장	
정수 참 조	각 안 참 조	발 신	통 계	검열 1972. 7. 20 서울특별시 통계관	
제 목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해제				
	제 1 안 내부절재				
	제 목 . 동 전				
	1. 마포구 합정동 81 에 위치한 지정 보호수 제 39 호 가 완전 고사하여 미관상 불미 하므로 지정 해제 조치 합니다				
	가. 고사로 재생이 불가능함				
	나. 고사로 인하여 가지가 절단 되어 인접				

8376

정서

관인

발송

0201-1-8A

1969. 11. 10. 승인

1/2

230mm x 268mm 백상지 50g/m<sup>2</sup>

(서울특별시청 공문 처리규정 제 14 조)

주민의 피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정 보호수 해제 목록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수령	수고	흉고직경	해제사유
39	마포구합정동	느리나무	300년	30m	2.60cm	고사

3.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조치

합니다

제 2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108호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해제

1.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중 고사로 인하여 보존  
관리의 가치가 없음 의견 다음 보호수를 해제함을 고시  
합니다

가. 해제 목록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수령	수고	흉고직경	해제사유
39	마포구합정동	느리나무	300년	30m	2.6cm	완전고사

1972. 7.

서울특별시 장

제 3안 시행안

수신. 마포구청

참조. 산업과장

제복. 등 건

108	무심사
108	법무과장
108	법제과장
108	감사자
108	등
108	호와

고

1. 산업 410 ~ 12427 (72. 7. 10)

시

관련됨

2.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제39호목을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해제하니 구청장  
책임하에 완전제거 조치 할것이며

3. 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조치  
시달 할것이니 양지 할것

첨부. 해제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4안 시행안

수신. 공보실장 (NoP54)

발신. 녹지과장

제목. 동건

1. 별첨과 같이 당시 지정보호수를 해제  
하였기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호사본 1부 끝

제5안 시행안

수신. 산림청장

참조. 임정국장

제목. 동건

1. 임정 130 ~ 2434 (67. 12. 30) 호와 관련

됩니다

2.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당시 지정보호  
수를 해제 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호사본 1부 끝